

Please Click here to view the drawing

Korean FullDoc.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OREAN PATENT ABSTRACTS

(11)Publication number:

1020000036731

(43) Date of publication of application: 05.07.2000

(21)Application number:

1020000015634

(71)Applicant:

LEE, YOUNG MAN

(22) Date of filing:

27.03.2000

(72)Inventor

LEE, YOUNG MAN

(22)Date of fi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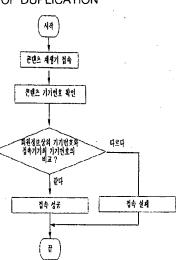
(51)Int. CI

G06F 17 /00

(54) CONTENTS EXECUTER FOR COMPUTER CONTROL IMPASSIBLE OF DUPLICATION

(57) Abstract:

PURPOSE: A contents executer for a computer control impossible of duplication is provided to input information on users in a front part of contents data, and to store the inputted information in a computer, when recording contents data supplied from a service provider, on the computer. CONSTITUTION: A contents executer for a computer control impossible of duplication executes requested contents by downloading contents data from a computer. The executer comprises an input unit, a searcher, a first comparator, a recorder, and a second comparator. The first comparator compares a user number of the executer and user information. The recorder records private information of a



requester who desire receiving contents data, and user information of contents executer which the requester holds, on the contents data. The recorder does the contents data on a memory. The second comparator compares the user information within the mixed contents data and the recorded user information, when the requester desires downloading the mixed data with the executer. If the compared information are consisted, a contents manager program is executed so as to download the contents data with the executer. If not, the program is not executed, not to download the contents data with the executer.

COPYRIGHT 2000 KIPO

Legal Status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⁶ G06F 17/00 (11) 공개번호 특2000-0036731

(43) 공개일자 2000년07월05일

(21) 출원번호

10-2000-0015634

(22) 출원일자

2000년03월27일

(71) 출원인

이영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삼정아파트 202동 106호

(72) 발명자

이영만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삼정Apt.202동106호

심사청구 : 있음

(54) 복제가 불가능 하게 한 컴퓨터 제어용 콘텐츠 재생장치

요약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 받고 있다. 이 콘텐츠는 텍스트등의 문자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또는 음악을 들을수 있는 엠피쓰리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 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공 받은 콘텐츠 데이터는 컴퓨터나 전용의 콘텐츠 재생기를 통해 재생 되므로 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데이터는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다운 받은 다음 이 다운 받은 콘텐츠 데이터를 전용의 콘텐츠 재생기로 이동 시켜 이 콘텐츠 대생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것인데, 이 경우 문제점으로는 이용 요금에 관련된 것으로, 먼저 특정 컴퓨터에 콘텐츠 데이터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부터 다운 시킨 콘텐츠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다. 즉이 다른 사람은 소정의 콘텐츠 이용료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무료로 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매출이 줄어들 뿐 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복사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콘텐츠 데이터의 불법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 되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사용자가 콘텐츠 데이터를 서비스 받기를 원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이 사용자에게 콘텐츠 데이터에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를 넣어 전송한다. 이렇게 특정의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데이터는 특정인의 콘텐츠 재생기에서만 재생 되고 다른 사람의 재생기에서는 이 특정 정보를 해석이 되지 않으므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재생이 되므로 불법복사는 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

색인어

콘텐츠 재생기, 콘텐츠 데이터,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용자 정보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 불법복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 콘텐츠 재생기기와 컴퓨터와의 연결 상태도

도2 : 콘텐츠 재생기기의 내부 블록도

도3 :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의 예

도4: 종래의 콘텐츠 재생기기내의 메모리 구조의 예

도5 : 본 발명의 예로서 제품번호를 포함한 콘텐츠 재생기기내의 메모리 구조의 예

도6 : 도5 의 메모리 구조안의 제품번호의 적용 예

도7 : 제품 기기번호를 입력 하기 위해 사용되는 CMD와 DATA의 타이밍도

도8 : 콘텐츠 재생기기에 제품의 기기번호를 부여 하는 경우의 흐름도

도9 : 콘텐츠 재생기기와 콘텐츠 메니저 프로그램과의 연결시 양쪽의 정보를 비교하는 판결 흐름도 1

도10 :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에서 회원정보를 입력 하는 시작 화면의 예

도11 :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에서 회원정보를 입력 하는 경우의 예

도12 : 도10에서 확인을 선택 한 후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와 도10에서 입력한 제품번호가 같은 경우의 환영합니다 표시의 예

도13 : 도10에서 확인을 선택 한 후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와 도10에서 입력한 제품번호가 다를 경우의 연결 확인요청 표시의

예

도14 : 콘텐츠 재생기기와 콘텐츠 메니저 프로그램과의 연결시 양쪽의 정보를 비교하는 판결 흐름도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 종래기술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로 전송 하려면 우선 본인의 컴퓨터에 콘텐츠 데이터를 저장 하여야 하는데, 이 콘텐츠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컴퓨터통신 등에 유료로 서비스 하는 사업자 등을 통해 제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유료로 다운 받은 콘텐츠 데이터를 서비스 받은 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면 서비스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복사이며 사회적으로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유료로 제공 받은 사람이외의 사람은 사용 하지 못 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 받고 있다. 이 콘텐츠는 텍스트등의 문자데이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엠피쓰리 데이터 또는 음성,영상 데이터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공 받은 콘텐츠 데이터는 컴퓨터나 전용의 콘텐츠 재생기에서 를 통해 재생 되므로 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데이터는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다운 받은 다음 이 다운 받은 콘텐츠 데이터를 전용의 콘텐츠 재생기로 이동 시켜 이 콘텐츠 재생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것인데, 이 경우 문제점으로는 이용요금에 관련된 것으로, 예를들면 특정 컴퓨터에 콘텐츠 데이터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로부터 다운 시킨 상기의 여러 가지 콘텐츠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다. 즉이 다른 사람은 소정의 콘텐츠 이용료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무료로 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매출이 줄어들 뿐 만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복사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해결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콘텐츠 데이터의 불법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 되었으며 해결방 안으로는 우선 사용자가 콘텐츠 데이터를 서비스 받기를 원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이 사용자에게 콘텐츠 데이터에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를 넣어 전송한다. 이렇게 특정의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데이터는 특정인의 콘텐츠 재생기에서만 재생 되고 다른 사람의 재생기에서는 이 특정 정보를 해석이 되지 않으므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재생이 되므로 불법복사는 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기록 할 때 콘텐츠 데이터의 앞 부분에 사용자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재생기의 기기번호 등과 같은 사용자의 정보를 넣어 컴퓨터에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콘텐츠 데이터를 다시 콘텐츠 재생기기로 다운 할 경우 상기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된 콘텐츠 데이터 안의 제품번호와 연결 하려는 콘텐츠 재생기기의 제품번호를 비교하여 같으면 접속성공으로 인식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기로 전송 시키고, 만약 다를 경우 접속실패로 인식하여 콘텐츠 재생기기로의 콘텐츠 데이터의 다운을 막을 수 있으므로 불법복사를 불가능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1은 컴퓨터 메모리에 기록,저장 되어 있는 콘텐츠 데이터를 전용의 콘텐츠 재생기와 연결하여 상기의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의 콘텐츠 재생기로 전송하는 통상의 콘텐츠 재생기와 컴퓨터와의 연결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통상의 콘텐츠 재생기의 구성을 조금 더자세히 설명 해 보면 「101」은 상기의 콘텐츠 재생기이고 「102」는 콘텐츠 재생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동작키, 「103」은 콘텐츠 재생기의 동작키의 의한 콘텐츠 재생기의 동작상태나 현재 출력되고 있는 콘텐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동작표시기로도 사용 되며, 예로서 영상신호나 문자데이터의 표시가 가능한 LCD등의 액정표시기이다.「104」는 「105」의 컴퓨터와 콘텐츠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연결 시키는 콘넥터 와이어 이다. 동작 설명을 보면 우선 「105」의 컴퓨터에는 통상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다운 받은 콘텐츠 데이타가 보관 되어 있고, 이 콘텐츠 데이터를 다운 받아 재생 시키는 재생기가 「101」이다. 다음 상기의 「101」의 콘텐츠 재생기의 내부 블록을 도2에 보였다. 도2를 설명 하면, 먼저 「201」은 상기 도1의 「104」콘넥터 와이어가 연결되는 콘넥터, 「202」는 「201」의 콘넥터를 통해 전송되어 들어오는 상기의 콘텐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203」은 콘텐츠 디코더로 상기의 「202」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 데이터를 원래의 콘텐츠 신호로 디코딩 하는 역할을 한다. 「204」는

「203」의 콘텐츠 디코더에서 출력되는 콘텐츠 신호가 오디오 신호일 경우 상기의 오디오 신호를 일정레벨로 증폭시키는 오디오앰 프,「205」는 「204」의 오디오 앰프에 연결되어 소리로서 들을 수 있게 하는 스피커 이며,「206」이와 같은 전체 콘텐츠 재생기를 전체적으로 콘트롤 하는 마이콤이다.「207」은 상기의 콘텐츠 신호가 상기의 오디오 이외의 문자, 영상등으로 표시 되어야할 복합데이터 일 경우 표시 시켜야할 표시기 이다. 이 표시기는 만화등의 그림이나 에니메이션, 또는 영상 비디오등을 표시할 수 있는 액정 표시기나 단순의 문자 표시가 가능한 LCD 등의 표시기로 연결 될 수 있다. 다음은 「CMD」와 「DATA」로 「CMD」는 DATA로 출력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판별 하는 신호로 이 CMD가 "1" 이면 상기 「202」의 메모리의 어드레스 데이터를 의미하고,이 CMD가 "0" 이면 상기 「202」의 메모리의 어드레스에 기록 되거나 쓰여지는 실제 콘텐츠 데이터를 의미한다. 다음은 도3의 설명 해보면, 도3는 상기 「202」의 콘텐츠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의 구조를 보인 것으로 크게 상기의 메모리는 두개의 구조로 나뉠수 있는데 하나는 TOC (Table of Contents)와 메모리 영역이다.

여기서 TOC는 실제 메모리내의 구성을 보이는 테이블이다. 즉 메모리내에 어떤 콘텐츠 데이터가 기록 되었고, 콘텐츠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는지 등의 정보의 데이터가 기록 되어 있으며, 다음 메모리영역은 콘텐츠 자체의 순수 데이터가 기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서 지금까지 기존의 콘텐츠 재생기의 기본 구성과 내부블록, 그리고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의 콘텐츠 재생기에는 컴퓨터에 기록 되어 있는 콘텐츠 데이터를 다운 받는데 있어서 어디에 있는 컴퓨터나 어느 누군가가 다운 받 은 콘텐츠 데이터를 아무 제약 없이 다운 받을 수 있으므로 콘텐츠 데이터를 다운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므로 저작권적인 문제로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유료의 콘텐츠 데이터를 다운 받았다면 그 사람 만이 사용 되어 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위 설명의 유료로 다운 받은 콘텐츠 데이타를 자기의 콘텐츠 재생기에 다운 받는 다면 불법 다운이 되므로 사회적으로나 유통적 문제로나 세금적인 문제로 볼 때 국가적으로 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불법복사의 국가로 이미지가 크게 손상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불법복사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발명 되었으며, 그 방법으로는 먼저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 시키고, 회원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콘텐츠 재생기기마다 고유로 지정 되어 있는 기기의 제품번호를 입력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자 정보가 입력되면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회원정보를 인식하여 이미 회원가입 할 때 입력된 정보와 일치 할 경우 비로소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되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이미 받아 놓은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로 다운 로드 할 수 있다. 다음은 실제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료로 콘텐츠 데이터를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에서는 이 콘텐츠 데이터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포함하여 컴퓨터에 저장 한다. 즉 단순히 콘텐츠 데이터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자의 회원정보를 포함 하므로 이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상기의 불법복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상기의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컴퓨터에 받아 놓은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로 다운 로드 할 경우 접속된 콘텐츠 재생기의 제품번호를 검색 하고, 그 기기의 제품번호와 다운 받으려고 하는 콘텐츠 데이터 안에 기록 되어 있는 접속기기의 번호를 비교하여 같으면 본인의 기기이므로 접속이 성공 하여 다운 받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 재생기를 접속하면 접속된 콘텐츠 재생기기와 콘텐츠 데이터 안에 기록 되어 있는 접속기기의 번호가 다를 것이 당연 하므로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은 현재 접속된 콘텐츠 재생기기에 접속 불가의 메세지를 보낸다. 이러한 결과를 한번 더 정리 하면 어느 특정 회원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료로 다운 받았다면 그 콘텐츠 데이터는 상기의 특정회원이 보유한 콘텐츠 재생기기로만 다운 되고 다른 콘텐츠 재생기기로는 다운 되지 않아 불법복사가 되지 않아 본 발명의 목적인 불법복사를 막을 수 있다.

다음은 상기의 불법복사 관계의 동작 설명을 그림을 참조로 구체적으로 설명 해 보겠다. 우선 컴퓨터에는 도10과 같은 콘텐츠 전용 의 메니져프로그램이 제공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메니져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은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 공 받거나 또 제공 받은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기로 다운 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콘텐츠 프로그램은 회원이름, 비밀번호,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를 입력 하여야 비로소 실행이 된다. 이 상기의 회원정보는 최초로 입력시 이 정보가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되고 다음 사용 할 때 마다 도11과 같이 회원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을 하면 이미 기록된 회 원정보와 비교 하여 같으면 도12와 같이 접속 된 것을 통보 하여, 같지 않으면 도13과 같이 접속실패를 알려 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 을 요청한다. 여기서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를 입력 하는 것은 본 발명의 목적인 불법복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재생기 기를 구매 할 때 제품에 하나씩 부여 되는 번호로 이 번호가 콘텐츠 데이터에 섞어 기록 되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상기의 회원정보 입력시 입력된 이 기기번호가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달 되어 이 회원이 콘텐츠 데이터의 다운을 원 할 때 순수의 콘텐츠 데이 터에다 이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를 같이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도3에 보였다. 도3을 보면 순수의 콘텐츠데이터에 회원의 이 름, 비밀번호, 기기번호가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 할 때 단순히 콘텐츠 데이터 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회원의 정보도 같이 보내는 것이다. 도3은 다시 보면 데이터의 처음 16 바이 트는 회원이름, 다음16바이트는 비밀번호, 다음 16바이트는 다운 받으려고 하는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가 할당 되어 있다. 다 음 에서야 순수 콘텐츠 데이터가 붙어 함께 전송 된다. 다음은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의 입력은 생산공장에서 출하 될 때 부여 받는 것으로 일종의 제품의 시리얼 번호와 같이 제품당 하나의 고유 한 번호를 부여 받는 것이다. 부여 방법으로는 콘텐츠 재생기기안의 메모리영역에 제품의 기기번호를 입력 하는 것이다. 기기번호 가 입력 되는 메모리내의 위치는 메모리 내 TOC영역 보다 상위의 위치로 도5에 보였다. 즉 메모리내 처음 5 바이트를 기기번호영 역으로 할당 하는 것이다. 도4는 종래의 메모리 구조로 TOC와 DATA영역의 2 개로 나뉘었지만 도5에서는 어드레스 0000 - 00004 번지 까지의 5 바이트가 할당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기기번호 영역에 기기번호를 입력 하는 방법으로는 도8과 같이 상기 메모리의 00000번지부터 00004번지 까지를 검색 하여 모두 상기의 기기번호 데이타인 5바이트가 모두 FFFFFFFFF 데이터

라면 아직 기기번호를 부여 받지 못 한 것이므로 새로운 기기번호를 부여 한다. 이 부여 방법은 제품출하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부여 하면 되는 것이다. 도7에는 실제 기기번호가 입력 되는 경우의 타이밍도를 보였다. CMD가 ' 1' 이면 번지위치 DATA를 쓰고 CMD가 " 0" 이면 기기번호의 첫번째 바이트를 쓴다. 도7에서는 예로서 1번 기기 번호, 2번 기기번호,3번 기기번호의 입력 예를 보였다. 이중 1번 기기번호의 예를 설명 해 보면 첫번째 CMD "1"에서는 주소 데이터인 00000 데이터를 쓰고 " 0" 에서는 첫번째 기기번호 데이터인 00을 쓴다. 두번째 CMD "1"에서는 주소 데이터인 00001 데이터를 쓰고 " 0" 에서는 두번째 기기번호 데이터인00을 쓴다. 다음 세번째 CMD "1"에서는 주소 데이터인 00002 데이터를 쓰고 " 0" 에서는 세번째 기기번호 데이터인 00을 쓴다. 네번째 CMD "1"에서는 주소 데이터인 00003 데이터를 쓰고 " 0" 에서는 네번째 기기번호 데이터인00을 쓴다. 다섯번째 CMD "1"에서는 주소 데이터인 00004 데이터를 쓰고 " 0" 에서는 네번째 기기번호 데이터인00을 쓴다. 다섯번째 CMD "1"에서는 주소 데이터인 00004 데이터를 쓰고 " 0" 에서는 다섯번째 기기번호 데이터인 01을 쓴다.

이 결과를 도6에 보였다. 이로서 콘텐츠 재생기기의 기기번호 입력이 완료 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제품의 기기번호를 어떻게 사용 되는 지를 알아 본다.

도9는 도11의 콘텐츠 메니져프로그램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기번호를 입력 하여야 하는데 자기의 콘텐츠 재생기기번호를 입력 하고 자기의 콘텐츠 재생기 연결 하였다면 바로 상기의 프로그램이 실행 되는데, 만약 자기의 콘텐츠 재생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 생기기을 연걸 하였다면 회원정보상의 기기번호와 제품의 기기번호가 다르므로 상기의 프로그램을 실행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 을 도9의 타이밍 도에 보였다.

이 경우는 상기 프로그램에 입력 하는 회원의 이름과 비밀번호, 기기번호가 다를 경우로 당연히 본 발명의 결과로 접속이 안되지만 만약 친구의 컴퓨터와 같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 할 경우 자기의 이름과 비밀번호, 기기번호를 입력 하고 본의 콘텐츠 재생기를 연결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 이므로 분명히 그 사람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콘텐츠 데이터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다운 받기를 원한 다면, 즉 불법복사를 하기 위해 접속되어 있는 자신의 콘텐츠 재생기기로 다운을 하려고 한다면 도3에 있는 콘텐츠 데이터내의 친구의 기기번호와 도5의 자신의 콘텐츠 재생기기번호의 검색 결과 당연히 다르므로 콘텐츠 데이터 다운에 실패 할 것 이다. 이 관계는 도14에 보였다. 따라서 본 발명을 이용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운 받은 콘텐츠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없을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에도 본인의 콘텐츠 재생기기가 접속이 되지 않으므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유료로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만이 콘텐츠 재생기를 이용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저작권과 관계 있는 콘텐츠 데이터의 불법복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청구의 범위

청구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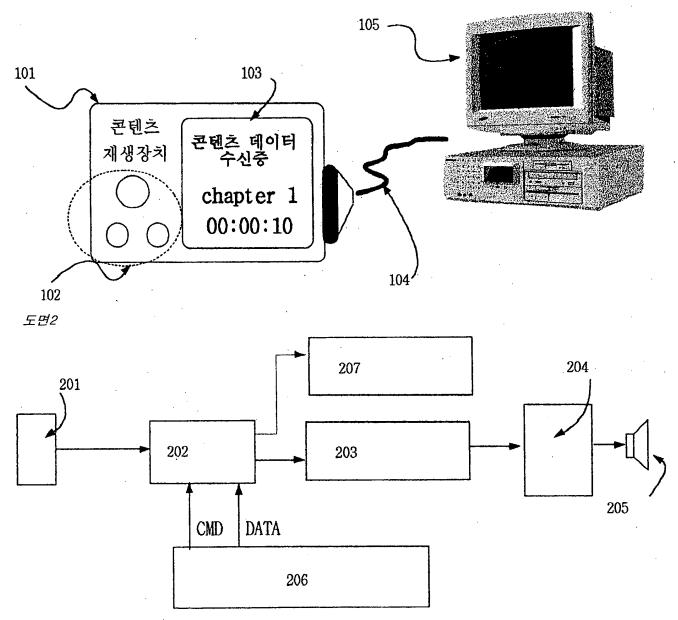
컴퓨터에서 콘텐츠 데이터를 다운 받아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컴퓨터 제어의 콘텐츠 재생장치에 있어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콘텐츠 재생장치 전용의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에 사용자의 이름, 비밀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수단, 컴퓨터에 접속된 콘텐츠 재생기의 사용자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수단, 상기 콘텐츠 재생장치의 사용자번호와 상기의 사용자 정보와 비교하는 비교수단, 상기 비교 결과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면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을 실행 하나, 일치 하지 않으면 상기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으며,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 하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 받아 컴퓨터 등의 메모리에 저장 되는 콘텐츠 데이터에는, 상기의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의 이름,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 재생기의 사용자 정보와 함께 기록되며, 이 콘텐츠 데이터를 컴퓨터의 메모리에 기록 시키는 기록수단, 상기의 사용자 정보가 혼합된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로 다운 받기 원할 때, 상기의 혼합된 콘텐츠 데이터 안의 사용자 정보와 다운 받으려는 콘텐츠 재생기에 기록된 사용자 정보를 비교 하는 비교 수단, 상기의 비교 수단의 결과로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면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일치 하지 않으면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재생기로 다운 받을 수 없도록 장기의 프로그램이 실행 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복사가 불가능 한 콘텐츠 재생장치

청구항2

1항에 있어서 콘텐츠 재생기에 기록 되어있는 사용자 정보는 콘텐츠 재생기내의 플레쉬메모리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나 콘텐츠 재생기의 마이콤 등의 부품에 기록 되며, 일단 입력된 콘텐츠 재생기의 사용자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 하며, 상기의 콘텐츠 재생기 사용자 정보에는 제품 시리얼번호와 같은 일련의 번호 뿐만이 아니라 제조회사, 제조 년 월 일, 제조공장 등의 콘텐츠 재생기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복사가 불가능 한 콘텐츠 재생장치

청구항3

1항에 있어서 콘텐츠 데이터는 엠피쓰리 데이터, 음성데이터, 영상데이터, 문자데이터, 그래픽데이터 등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의 복사방지를 위한 콘텐츠 재생장치.



도면3

ADDRESS	내 용		
0000 - 000F	회원이름		
0010 - 001F	비밀번호		
· 0020 - 002F	기기번호		
0030 - FFFF	콘텐츠 데이터		

도면4

ADDRESS	내 용		
00000 - 000FF	TOC 영역		
00100 - 0FFFF	DATA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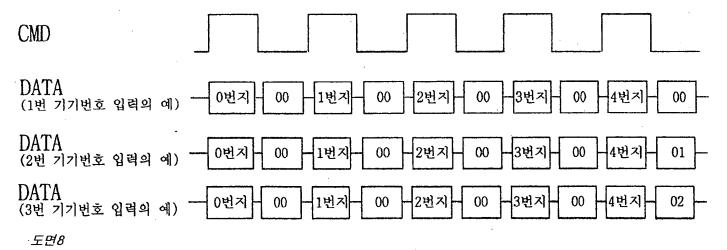
도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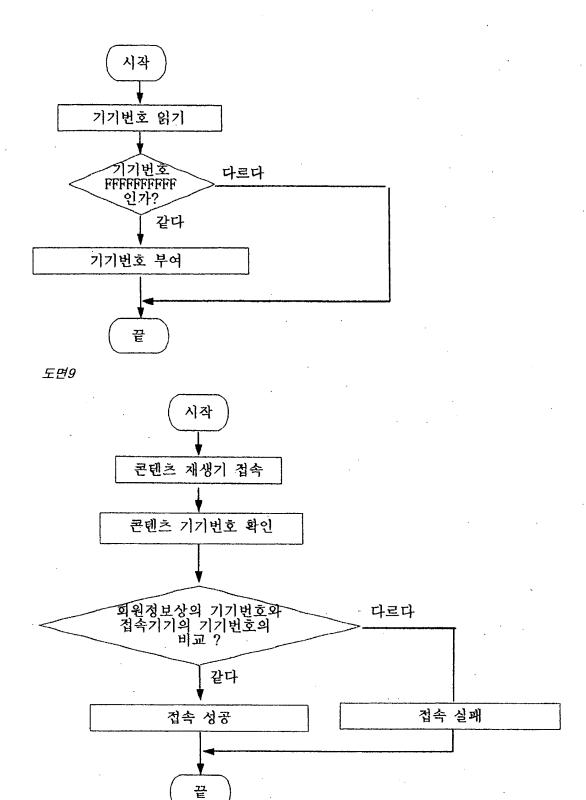
ADDRESS	내 용			
00000 - 00004	제품번호 영역			
00005 - 000FF	TOC 영역			
00100 - FFFFF	DATA 영역			

도면6

ADDRESS	내 용
00000Н	번호 0 - 00
00001H	번호 1 - 00
00002Н	번호 2 ~ 00
0000ЗН	번호 3 - 00
00004Н	번호 4 - 01

도면7





도면10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

회원이름 :

비밀번호 :

기기번호:

확인

취소

도면11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

회원이름 : 이영만

비밀번호 : 76543210

기기번호: 0000001

확인

취소

도면12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

회원이름 : 이영만

비밀번호 : 76543210

기기번호 : 0000001

이영만 회원님 환영 합니다.

도면13

콘텐츠 메니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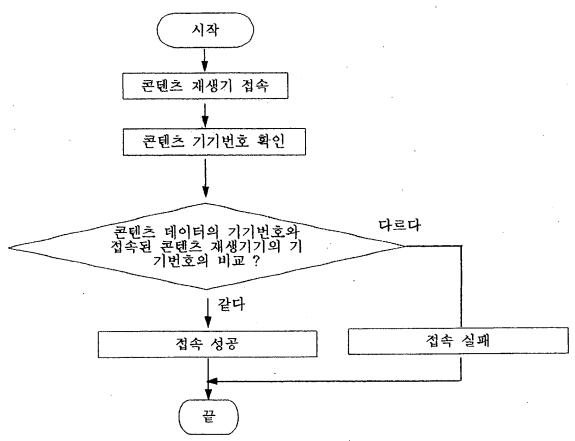
회원이름 : 이영만

비밀번호: 76543210

기기번호: 0000001

회원님의 기기를 확인 하세요.

도면14



- 온라인 제출 결과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제출결과조회를 통해 접수하신 서류에 대한 접수결과 및 방식심사 진행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서식작성기에서 입력한 수수료 금액이며, 제출결과조회 화면에서 특허청 전산시스템에서 계산한 수수 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시: 2006년 07월 07일 16시 45분 13초

접수번호(납부자번 호)	사건번호	권리	서류명	발명의 명칭	수수료(원)	접수결과
	[출원]20-2006-00	실용신안등록		포장상자용 보강	0	접수완료
2-70	13212	출원	정서	기구		5 , C ±

● 제출시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제출한 접수서류가 ZIP 파일의 손상, 전자서명 오류,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물리적인 오류]와 [명백한 반려사유]에 해당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시 유의사항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접수번호에 기관코드(0131)가 추가된 납부자번호를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0131-x-x-xxxx-xxxxxxxxxx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보정통지서를 받은 후 서지사항보정서 (심판서류의 경우 서지사항보정서나 심판청구보정서)와 함께

미납 수수료 + 보정료 3,000원(서면접수의 경우 13,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조기에 심사받기 원하시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지재권제도안내의 우선심사안내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is Page is Inserted by IFW Indexing and Scanning Operations and is not part of the Official Record.

BEST AVAILABLE IMAGES

Defective images within this document are accurate representations of the original documents submitted by the applicant.

Defects in the imag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items checked:

□ BLACK BORDERS
□ IMAGE CUT OFF AT TOP, BOTTOM OR SIDES
□ FADED TEXT OR DRAWING
□ BLURRED OR ILLEGIBLE TEXT OR DRAWING
□ SKEWED/SLANTED IMAGES
□ COLOR OR BLACK AND WHITE PHOTOGRAPHS
□ CRAY SCALE DOCUMENTS
□ LINES OR MARKS ON ORIGINAL DOCUMENT
□ REFERENCE(S) OR EXHIBIT(S) SUBMITTED ARE POOR QUALITY

IMAGES ARE BEST AVAILABLE COPY.

□ OTHER: ____

As rescanning these documents will not correct the image problems checked, please do not report these problems to the IFW Image Problem Mailbox.